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6. 11.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손정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5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제명 개정

- (기존)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정비

- 도시숲등 → 도시숲등의 (안 제4조제2항제9호, 안 제5조 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5조제11항)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내용 정비 (안 제5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 정비

- 제6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 제6조제1항 법 제12조제3항
- 제8조제1항 법 제12조제3항 → 제8조제1항 법 제12조제4항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의 별표 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시(안 제14조제1항)

마. 비용부담 사항 정비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조문 삭제 (안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바. 상위법 시행일을 반영한 부칙 시행일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양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공원조성과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6. 6.(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붙임1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구성 최소인원 변경(6→7명)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안의 내용이 타시군과 비교 조례의 조항 명칭 고려 수정,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으로 소요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인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나, 산출근거 상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연간 소요예산 추정액: 750,000원 ~ 1,550,000원

위원 구성인원	산출근거	예상비용
7명(최소)	위촉직 5명 x 100,000원 x 1회 + 속기료 250,000원	750,000원
15명(최대)	위촉직 13명 x 100,000원 x 1회 + 속기료 250,000원	1,550,000원

※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 구성인원: 6명(당연직2, 위촉직4)
- 개최횟수: 2018 ~ 2023년 미개최
- 예산편성현황: 2023년 20,720천원 / 2024년 17,680천원

(도시공원위원회 수당과 함께 편성한 사항이며, 위원회 미개최로 지출내역 없음)

4. 작성자

환경국 공원조성과장 국주호